

「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7년 3월 23일 김익수의원의외 8인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23일

다. 상정일자 : 2007년 4월 6일

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생략(서면)

나. 제안이유

-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하고 있으나 일정한 제출기일이 없어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 제출시한을 명확히 하고자함.

다. 주요내용

-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제출기일 규정을 신설<제19조제2항 신설>

라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63조

3. 검토보고 요지 : 전문위원 박경찬

-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구미시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일정한 제출기일이 없음,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 제출시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개정내용은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제출기일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임.
-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 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의 경우 필요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생략

8. 기타필요한사항 : 생략